

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강동길 의원입니다.

○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서울시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입법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2018년도 서울시 조례는 약 500여개가 있었으나, 2023년 현재 800개가 넘는 등 짧은 시간동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, 조례 수가 늘어나면서 실질적 효용성은 없고, 절차 혹은 규제로만 남아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.

- 또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반영이 안된, 즉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거나 환경의 변화로 당초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등 서울시 조례의 정기적인 입법평가를 통하여 자치법규로써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, 사업시행의 목표에 맞게 개정하여 그 효과를 높이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
 - 제2조에서는 사후 입법평가와 소관부서 그리고 총괄부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,

- 제3조에서는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조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,

- 제5조에서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,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등 입법평가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
-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